

제주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 각시’*

박상란**

1. 들어가는 말
2. 망각과 순화의 지점들
 - 1)일반적 인권 유린의 경우
 - 2)성고문의 경우
3. ‘순경 각시’로 기억하기
4. 맺음말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기억서사의 관점에서 제주4.3 당시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기억 방식과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주요 분석 대상은 여성 화자의 제주4.3 체험담 중 성적 침해 가능성이 높은 일반적 인권 유린, 성고문, ‘순경 각시’ 관련 서사다.

감금, 고문 등의 경우 성적 침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권 유린으로 인지되었다. 성고문의 경우 나신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보다 구타 등 다른 고문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이 부각되었다. 모두 성적 요소를 지우려는 기억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순경 각시’는 군경과 ‘관계’를 맺은 여성을 말한다. 정식 결혼에서부터 사실혼, 일시적 강간 등 관계 양상은 다양하지만, 강압에 의해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모두 강간에 해당된다. 여성들이 이를 ‘순경 각시’로 기억한 것은 성적/정치적 안전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6434).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요컨대 제주4.3 당시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 여성들은 침묵하거나 성적 요소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구술하였다. 기억한 것을 구술한다는 점에서 이는 기억의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억의 취사선택 작업을 고려하면, 여성 화자들은 성폭력에 관한 성/정치적으로 안전한 것만 기억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제주4.3, 여성, ‘순경 각시’, 기억서사, 성폭력, 성고문, 인권 유린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제주4.3 당시의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기억 방식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억서사의 관점에서 여성이 기억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억하는 지점을 짚어보고 그 성/정치적 의미를 궁구한 것이다. 이는 제주4.3에 대한 여성의 기억 및 전승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일조하리라 본다.

제주4.3은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자 참상이다. 무장대와 군경 간에 벌어진 보복전 속에 술한 마을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제주민의 10프로 정도가 사망했기 때문이다.¹⁾ 이는 단독정부 수립 강행을 위해 해방 전후의 이념 갈등을 악용한, 이승만의 극우적 책동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4.3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최대 피해자는 무고한 마을민이다. 남녀노소 없이 무장대의 가족이라 하여²⁾ 감금, 고문, 살해 등을 당한 것이다. 무엇보다 연좌제로 인해 후세까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점이 가장 큰 피해다.

-
-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서울: 선인, 2003), 366-367쪽.
 - 2) 경찰의 가족이라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으나, 여러 증언이나 연구 결과를 보면 무장대 쪽의 피해가 훨씬 컸다.

한편 오랜 기간 피해 당사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제주4.3은 금기의 역사다. 정치적 불이익이 두려워 “어머니하고 딸 사이에도 말 못 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도 말”³⁾을 못했던 것이다. ‘4.3특별법’ 공포(2000),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확정(2003) 이후에야, 사건의 진상에 대해 피해자들이 발언할 수 있었다. 폭도의 난에서 비극적 사건 혹은, 항쟁으로 명예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의 한복판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할 만한 여성들의 피해상이 온전히 조명되지 못한 상태다.

당시 여성들의 피해는 불법 체포, 감금, 고문, 살인 등 일반적인 인권 유린뿐 아니라, 성고문, 강간 등 성폭력을 망라한 것이었다. 특히, 성폭력은 오로지 여성 피해자의 몫이었다는 점에서 제주4.3은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기에, 피해 여성들에게는 정치적 금기에 더해 이중적인 함구가 강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여성들은 남편 부재의 가족을 위한 생존 노동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가옥 및 마을 재건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선전, 연락, 물자 수송 등의 좌익 활동(이하 ‘활동’)도 하였으며⁴⁾, 축성 및 보초 등의 국가적 노역에도 동원되었다.⁵⁾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서 치명적인 희생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역할을 통해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상 역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간 제주4.3에 대한 연구가

3) 양중윤, 『이젠 신체는 못 찾아도 죽은 날만 알아졌으면 해』,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고 하면 사는 법』(제주4.3연구소·제주4.3평화재단 편, 제주: 한그루, 2010), 78쪽.

4) 당시 주한미군사령부의 정기보고서인 『G-2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30명을 포함한 약 80명의 ‘폭도’가 훈련하고 있었고, 여성 100명이 포함된 폭도 550명(최정예 ‘폭도 집단’)이 관측되었는데, 이들 여성 대원들은 연락과 선전 임무, 물자수송 임무를 맡고 있었다.(제주사삼연구소 편, 『4.3長征』 6, 제주: 제주사삼연구소, 1993, 47쪽, 150쪽)

5) 대부분의 체험담에 이러한 노역 동원 과정이 서사되어 있다.

사건 및 이념, 전반적인 물적, 인적 피해를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제주4.3 당시 여성의 피해 및 활동을 온전히 조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에 끼친 제주4.3의 영향력뿐 아니라 그 의미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활발히 채록 및 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4.3 증언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그간 이중적인 침묵을 강요당한 여성 증언자들의, 제주4.3에 대한 경험, 기억, 의식 등이 풍부히 갈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자료는 제주4.3 증언록 중 여성 증언록 52편⁶⁾이다.

이들 증언록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는 순수한 의미의 증언록

- 6) 제주4.3연구소 편, 『이제사 말함수다』(4.3증언자료집) 1, 2(파주: 한울, 1989), 40/8; 제주4.3연구소 편,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제주4.3 인권유린의 기록, 서울: 역사비평사, 2002), 10/1; 제주4.3연구소 편, 『그늘 속의 4.3』(구술자료 총서 12, 서울: 선인, 2009), 10/5; 제주4.3연구소·제주4.3평화재단 편, 『갈치가 갈치꼴랭이 끊어 먹었다 할 수 밖에』(제주4.3 구술자료 총서 1, 이하 ‘총서’로 표기하고 권수만 기입함, 제주: 한그루, 2010), 14/9; 제주4.3연구소·제주4.3평화재단 편,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고 하면 사는 법』, 앞의 책, 12/9; 제주4.3연구소·제주4.3평화재단 편,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에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총서 3, 제주: 한그루, 2011), 16/4; 제주4.3연구소·제주4.3평화재단 편, 『지금까지 살아진 것이 용천거라』(총서 4, 제주: 한그루, 2011), 11/4; 제주4.3연구소 편, 『다시 하귀중학원을 기억하며』(총서 5, 파주: 한울, 2013), 13/2; 제주4.3연구소 편, 『빌레못굴,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총서 6, 파주: 한울, 2013), 18/4; 제주4.3연구소 편, 『만벵디의 눈물』(총서 7, 파주: 한울, 2015), 13/4; 제주4.3연구소 편, 『가리방으로 기억하는 열두 살 소년의 4.3』(총서 8, 파주: 한울, 2015), 13/2.(각 서지 끝의 숫자는 전체 편수/여성 증언록 편수.) 마지막 8권은 4.3연구소가 수행한 ‘제주4.3 1000인 증언채록 사업’(2004~2008)의 결과물 중 84명의 증언록을 수록한 것으로 기명 처리 등 화자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채록물이다. 따라서 이 중 여성 증언록을 중심으로 하되, 성폭력 관련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오금숙이 채록하거나 소개한 1990년대 자료도 분석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제주4.3연구소 편, 서울: 역사와 비평사, 1999) 그 외 이상의 자료집 중 성폭력 관련 서사가 들어 있는 남성 증언록도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기보다 제주4.3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험담의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증언록을 체험담으로⁷⁾, 증언자를 화자 내지 구술자로 칭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들 증언록은 기억서사이기도 하다. 기억서사는 알리스테어 톰슨(Alistair Thomson)이 말한 'memory narrative'로 기억의 서사화(의미화와 통일성 지향) 작업을 강조한 말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사건의 취사선택, 구성, 강조를 바탕으로 한다.⁸⁾ 얀 반시나(Jan Vansina)는 이런 기억 작업을 주목하여, 구술자의 기억은 '편집된 판본'일 뿐이라고 한 바 있다. 많은 회상이 너무 사적이거나 고통스러워서, 혹은 정당화하기 번거로워서 제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이러한 기억의 판본이 '우화(fabulation)'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기억 조각들로 패튼을 만들고 빈틈을 채운 결과 원래보다 더 논리적이고 현재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⁹⁾ 금기된 역사에 대한 기억의 경우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구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상의 기억서사 개념은 제주 4.3체험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긴요하리라 본다.

기억서사의 관점에서 여성이 구술한 4.3체험담의 특징을 규명하려고 할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이 '여자 피해'¹⁰⁾ 즉, 성폭력 화제다. 이는 제주

7) 다만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한 서사만 체험담이라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것은 증언, 혹은 목격담이라 하기로 한다.

8) 기억서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도날드 A. 리치 편(손동유외 역), 『현대 구술사 연구의 현장』(서울: 선인, 2016), 145-145쪽 참조.

9) 이상 기억과 우화에 대해선, 얀 반시나(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서울: 아르케, 2010), 61쪽 참조. 여기에서 'fabulation'을 '소설화'라 하였는데 우화로 수정함.

10) 이는 남성 증언자인 김진주가 "(여자 피해) 그런 것은 말 안 하거든. 여자 피해 말은 원 나오지 않아."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제주도에서 여자가 피해를 안 당할 리가 있어?',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에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앞의 책, 264쪽)

4.3과 여성의 관련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면서, 기억 과정에서 사회문화적/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술자 개인의 2차피해에 대한 우려 및 정치적 불안감이 기억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여성의 4.3체험담에서 성폭력 화제의 비중이 크지 않고¹¹⁾, 서사가 소략하거나 모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억서사의 관점에서 여성 증언자가 성폭력 관련 기억을 조직하는 특징 및 의의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주4.3에 대해서는 진상, 피해, 담론, 기억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학(구술사),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¹²⁾ 무엇보다 피해와 활동을 중심으로 제주4.3의 여성 문제를 조명한 연구 성과도 있다. 인권 유린, 성폭력, 연좌제 등의 피해와, 정치 참여, 생존노동 등 활동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¹³⁾ 이외 제주4.3에 대한 여성 기억의 특징 및 의의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¹⁴⁾ 다만 제주4.3 연구 중 여성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여전히 크게 부족한 편이다. 강제 결혼을 포함한 성폭력의 경우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¹⁵⁾ 그나마 지금

11) 전체 52편 중 성적 피해 사례가 명확하게 서사된 경우는 11편, 그 중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례는 6편이다. 오금숙이 소개한 증언 자료 역시 16편 중 성적 피해 사례는 8편이고, 그 중 자기 체험담은 1편뿐이다.

12) 허호준,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 제주대 출판부, 2013) 참조.

13) 대표적으로, 오금숙, 앞의 글, 김성례,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제주 4·3화살을 중심으로』, 『흔적』 2, 문화과학사, 2001; 권귀숙,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 연구』, 『탐라문화』 45, 탐라문화연구원, 2014.

14) 대표적으로 권귀숙, 『기억의 재구성 과정-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 38-1, 한국사회학회, 2004; 『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15) ‘제주4.3과 여성’ 연구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권귀숙, 앞의 논문(2014), 176-177쪽 참조.

까지의 제주4.3 여성 연구는 사건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증적 연구로서의 성격이 짙다. 제주4.3의 문학적 재현물로서의 체험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소략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적 형상화의 차원에서 제주4.3에 대한 여성의 경험, 기억, 전승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제주4.3과 여성의 관련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성폭력에 대한 기억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4.3 체험담의 성폭력 문제를 여성 기억서사의 관점에서 다루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체험담을 일반적 인권 유린, 성고문, '순경 각시' 서사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중 일반적 인권 유린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적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성고문은 자백을 받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를, '순경 각시'는 자백과 무관하게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 즉, 강간 및 그 피해자 여성을 지칭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들 체험담에서 성적 요소가 생략/축소되는 방식을 여성 기억서사의 관점에서 논하고 성/정치학적 측면에서 그 의의를 규명하려 한다.

2. 망각과 순화의 지점들

1) 일반적 인권유린의 경우

여성 화자의 체험담 52편은 대체로 몇 가지 공통된 화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 배경, 활동상, 피해상, 재건 과정, 생계지책, 현재의 삶 등이 그것이다. 제주4.3 전 마을의 정치적 상황, 사건 당시 물자책 및 전단지 배포 등의 활동,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희생과 마을의 피해, 소개 해제 후 성담 구축 및 보초 근무, 남편 부재의 가족을 위한 생존 노동, 사건의

영향과 현재의 삶 등의 화제가 공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화자가 독자적으로 화제를 구성한 것 같지는 않다. 화자의 구술 방식¹⁶⁾을 고려하면, 면담자가 사전에 채록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구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의 구술 항목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화자가 이미 설정된 항목에 따라 구술한 것은 아니다. 자신과 무관한 경우 지정 항목을 건너뛰기도 하고, 자신만의 특유한 체험이 있는 경우 새로운 화제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화자별로 항목 간 넘나들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화제는 바로 피해상이다.

제주4.3 당시 여성 피해는 다양하였다. 부재한 남편 대신 강제 노역에 동원¹⁷⁾되었을 뿐 아니라, 임신부 내지 아기 엄마의 경우 도주에 실패해 폭력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주4.3 여성의 피해로서 대표적인 것은 공권력에 의한 일반적인 인권 유린이다. 여성 체험담에서도 이러한 인권 침해 관련 서사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¹⁸⁾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편의 입산, 도주, 행방불명으로 인해 체포, 감금, 고문, 살해를 당한 것이다. 물론 인권 유린은 당시 남녀를 불문하고 자행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피해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16) 예컨대, “남편은? 남편은 4.3사건이란 말 나기도 전에 그냥”(김순동, 『죄 있는 사람이 건 죄 없는 사람이건 다 잡아갔으니까』,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에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앞의 책, 193쪽)과 같이 질문에 반문하거나, “내가 살아 온 내력은 뭐 말하고 뭐할 게 없어”(현경아,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고 하면 사는 법』,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고 하면 사는 법』, 앞의 책, 237쪽)과 같이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구술하는 것을 말한다.

17) 축성, 보초, 훈련, 교육뿐 아니라 토벌대나 순경 가족의 수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녀자들이 군인들의 온갖 시중을 든 사례에 대해서는, 『발굴-4.3 유적지: 수난과 한의 상징 ‘시오름 주둔소’』 2, 『4.3장정』 5(제주: 제주사삼연구소, 1992), 80쪽 참조

18) 이후 논의할 상해(살해), 성고문, 강간 유형과의 중복을 포함해서 32편에 나오고 이 중 직접 체험 사례는 15편.

이들의 남편은 대체로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 유린은 여성의 피해상이라 할 수 있다. “서방이 산에 오른 사람, 아들이 일본으로 도망간 할망, 아들과 서방이 집에 없다고 죽인 사람”¹⁹⁾과 같이, 남성의 ‘불온’한 부재로 인해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불온한 혐의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정치적 약점은 폐쇄된 공간에 던져진 여성의 자기 방어권을 극도로 약화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4.3 당시처럼 초법적 공권력이 자행된 가운데 벌어진, 여성의 체포 및 감금, 고문의 경우 성적 위기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관계에 따라 가족의 테두리에 있던 여성들이 느닷없이 남자들이 통제하는 바깥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 화자들의 당시 나이가 대체로 20대 초반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실제로 인권 유린이 성적 침탈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다. “심어당 젓통 동그려 불연. 겐 그 사람 팔팔 뛰엇”²⁰⁾다고 하는 신문 보도상의 내용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성고문이 자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연대 보증이니 처녀 잡아가면서 ‘이리 와’ 하면 절대 명령”²¹⁾이라거나, “옷 벗겨 겁탈, 뭐 그런 정도까지는 했는지 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네 집 여자 잡혀갔다 왔다 하면 그런가 해십주.”²²⁾라는 말은 당시 체포된 여성들이 겁간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주4.3 당시 15세 이상 젊은 여성이 직면한 ‘위기감’²³⁾ 역시 도 전체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겁간의 위기를 이르는 것이다. ‘군경이 사람 죽이고 겁간’²⁴⁾했다거나

19) 『이제사 말함수다』 1, 앞의 책, 44쪽.

20) 김진주, 앞의 증언, 264쪽.

21) 같은 글.

22) 『이제사 말함수다』 2, 앞의 책, 222쪽.

23) 예컨대 한 여성은 ‘경찰헌터 당허카부덴, 여자아이난. 큰 딸을 굴속에 숨어 살게 했으며, 경찰이 계속 찾으면 딸들이 죽었다고 하여 화를 면했다고 한다.(원옥연, 『늘 따라다니던 폭도 가족이라는 낙인』, 『지금까지 살아진 것이 용헌거라』, 앞의 책, 99쪽.)

‘동네 처녀들도 밤에 무조건 끌고 갔’²⁵⁾다는 데서 체포가 바로 겁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남성의 증언과 달리 여성의 체험담에는 성적 침해 요소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4.3 사건 책으로 내거나, 텔레비에도 자꾸 나오지마는 그건 아주 신성한 거라. (여자 피해) 그런 것은 말 안 하거든. 여자 피해 말은 원 나오지 않아.”²⁶⁾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정작 여성 화자들의 체험담에는 성폭력 피해 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성 화자들도 성고문에 대한 체험을 서사하였지만, 인권 유린에 비하면 극소수로 적다(5편). 이런 점에서 인권 유린에 대한 여성 화자들의 기억 속에서 성적 피해 요소는 지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망각 지점 즉, 성적 침해 요소야말로 제주4.3의 여성 피해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대개 기억되는 것은 강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고, 망각되는 것은 평범한 일상사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특수한 경험의 경우, 망각된 것이 오히려 인상적일 수도 있다. 성폭력 경험도 그 중 하나다. 이 때 성폭력 경험은 자신의 삶에서 사소해서가 아니라 충격적이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밀려났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망각된 것이 아니라 망각한 것이다. 현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이다.²⁷⁾ 물론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심은 전통 사회 이래 구술 당시까지

24) 『이제사 말함수다』 1, 앞의 책, 137쪽.

25) 이제신, 『4.3장정』 4(제주: 제주4.3연구소, 1991), 61쪽.

26) 김진주, 앞의 증언, 264쪽.

27) 고통스럽고, 안전하지 못한 기억에 대한 구성(compose, construct), 개작(remake), 억압 등 기억의 능동적 작업에 대해서는, Alistair Thomson, “Anzac memories: Putting popular memory theory into practice in Australia”, *The Oral History Reader*, Edited by Robert Perks and Alistair Thomson(New York: Routledge, 2006), pp.300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젠더 문화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 문란의 혐의를 두어 이에 대한 발설을 억압하는 문화가 그것이다. 물론 가해자가 군경 측, 공권력 행사자라는 점과 관련하여, 정치적 불안도 이러한 억압에 한 몫 했을 것이다. 현재는 정치적 금기가 많이 풀렸지만, 사건 이래 오랜 기간 제주4.3 피해자들은 ‘폭도’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정치적 금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으며, 이러한 함구가 쌓여 망각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억과 망각이 자연스러운 작용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응 방식을 알 수 있다. 망각이 ‘오히려 훨씬 의미심장함을 드러내는 형식’²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망각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감옥 밖에서 일어난 상해(살해)²⁹⁾의 경우 화자 자신의 체험은 대체로 마을에 대한 무차별 습격이나 도주 중 총상을 입은 일이다. 오직 정치적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적 침탈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마을이나 산속의 경우 감옥이라는 폐쇄적 공간보다 성적 침해의 위험이 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무질서와 혼란을 감안하면, 군경의 횡포가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마을이고 산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죽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상해(살해)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 외에 성적인 혐의도 있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악여자 살해 사건’³⁰⁾을 들 수 있

-301 참조.

28) 이상 기억과 망각의 정치적 기능 대해서는, 이성숙,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홍천: 아르케, 2013), 75쪽 참조.

29) 여기에서 상해는 총살 등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살해의 의미가 있어 둘을 나란히 기입하였다.

30) 현성진, 『그런 야만족은 따로 없었어』, 『가리방으로 기억하는 열두 살 소년의 4.3』, 앞의 책, 178쪽.

다. 이 여성은 엉덩이에 총상을 입었다가 결국 호미로 목이 끊겨 죽은 후 죽창에 매달렸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녀는 ‘예쁜’ 처녀였다고 하였다. 물론 이는 9세 소년의 목격담이기에, 그의 기준에 따른 것이겠지만 당시 군경이 자기들이 보기에 ‘예쁘고’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성적 침해를 하였고, 여의치 않으면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따라서 수감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여성들은 성적 위기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처녀들을 포함하여 젊은 여성들이 화를 당했다는 점도 이를 입증한다. 이들 여성의 경우 젊으니까 입산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인 혐의 때문에 살해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³²⁾ 성적 침탈에 저항하다 그리 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상해(살해) 역시 여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적 침해를 동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여성 화자들은 감금, 고문, 상해(살해) 등을 일반적인 인권 유린 경험으로만 기억하였다. 거기에 수반될 수 있는 성적 침해 요소를 망각한 것이다. 성적 침해가 수치스러움을 넘어 자신의 삶에 성/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 화자들이 망각한 지점 즉, 성적 요소를 통해 역설적으로 성폭력의 심각성 및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2)성고문의 경우

성고문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이른다. 이 중 여성들의 체험담에 나타나는 성고문 피해 양상은 수감

31)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로는 후술한, 집단 강간 후 살해 사건 참조

32) 여자라 하더라도 젊은 여성은 ‘살려두면 산쪽에 붙는다’면서 끌고 갔다고 한 증언이 있다. (『지금까지 살아진 것이 용헌거라』, 앞의 책, 214쪽, 편집자 주.)

중 발가벗긴 채 고문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화의 초점은 성적인 침해보다 매달린 채 당한 구타와 물고문이다. ‘나신(裸身)’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부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한 여성 화자의 경우, 한 차례 구타가 있는 후 “옷을 다 벗경(벗겨서) 두드리젠 순경덜이 마주” 썼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심하게 맞은 상태라 손이 부어 옷이 내려가지 않은 덕에 나신의 화는 면하고 구타, 물고문만 받았다고 하였다.³³⁾ 역시 임신 5개월째인 여성 화자의 경우 구타는 없이 ‘옷은 문딱 벗경 거꾸로’ 매달린 채 물고문만 받았다고 하였다.³⁴⁾ 나신이 성고문의 의미보다 구타 등 고문의 효율성을 위한 것처럼 서사되어 있다. 한편 구타가 동반되지 않은 채 나신만 강요 당한 사례도 있다.

나보고 옷을 짝 벗으라는 거라 마씨. 우알로 짝. 맨몸으로 짝 벗으려했나 어디 멍이렌 안 벗입네가? 겐 저기 강 서서 이제 옷을 짝 벗었수게. 벗으난 이제 한참 있단 입으라고 험디다.³⁵⁾

옷을 모두 벗으라 한 후, 한참 있다가 다시 입으라 하고서 모진 심문과 고문을 했다고 하였다. 구타에 이어 거꾸로 들어 올린 다음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꼬라박아서, 그야말로 ‘숨 끊어질 때까지 고문을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앞서의 사례와 달리 나신과 고문이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나신이 고문의 효율성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신 그 자체로 성적 침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33) 양영숙, 『4.3 장한 어머니상을 받다』, 『다시 하귀중학원을 기억하며』, 앞의 책, 74쪽.

34) 고권현, 『우리 사람은 어쩔 안 해도 문딱 부서 부난』,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에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앞의 책, 35쪽.

35) 홍난선, 『여기 저기 취조 후유증 약 먹어서 살저미씀』, 『지금까지 살아진 것이 용헌거라』, 앞의 책, 301쪽.

이 경우 나신으로 인한 수치심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역시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나신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강압적 상황이 강조되어 있다. 물론 당시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명령, 이후에 받은 참혹한 고문의 상처가 깊어 나신의 문제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타를 동반한 나신 상황에 비해서도 벗은 몸을 훑어만 보는 이 사례는 성적으로 더 수치스러웠을 수 있다. 벗으려 했다가 다시 입으라고만 했다지만, 그 사이(‘한참’ 동안) 실제로는 나신을 훑어보며 관음적 욕망을 채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순간 성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웠을 것이지만, 이러한 점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나신 고문을 제주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보고 사태 진압 차원에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남성 증언자의 관점³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반면 다음 사례의 경우 이러한 나신 고문이 피해자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나도 같이 나가서 그냥 끌려 앉았. 아버지영 같이 가서 나도 이틀 밤 살앙 나완. 한림지서에서 나 여기저기 잘도 맞았어. 아버지가 헨 일을 불렌 허는 거라. 막 묶어서 막 때리는데 아이고, 나 말허지 안허켜. 막 쳤피스러와. 말도 못해. 천장에 매달아서. 매달고 여자로서 치욕감. 옷 저 팬티영. 아이, 나 그 말 허여가민.....하여튼 나쁜 자식이야.³⁷⁾

‘옷 저 팬티영’이라는 말로 볼 때 이 역시 나신인 채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신으로 묶여 천장에 매달린 채 맞았다는 점에서 성고문을

36) 김호경(구술 당시 80세, 남, 사건 당시 서귀포 경찰서장) 증언, 1996(오금숙, 앞의 글, 243쪽 재인용).

37) 변부군, 『나 한림지서에서 치욕적으로 맞았어』, 『만병의 눈물』, 앞의 책, 160쪽.

당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화자가 이를 성고문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처음에는 단순히 구타를 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다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린 듯 “나 말하지 안혀켜”라며 구술을 꺼려하였다. 50여년이 지난 구술 당시에도 이를 언급함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당시 상황이 성적으로 수치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주저주저하면서 이 화자는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구술하였다. 물론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단지 나신 고문인지, 그 이상의 성폭력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여성으로서 치욕감’ 즉,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표현하여 나신 고문이 성고문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의 성고문 치사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는 목격한 사례지만, 함께 수감 중이던 동서의 일이다. 따라서 화자에게는 자신의 일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경험이기에 체험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 동서는 오죽해야...... 아이고...... 우리 동서는 너무 뒤틀리게 해서 죽었
수다. 옷 벗겨서...... 옷 벗겨서, 아랫도리도 다 벗겨서 밤새도록 밖에 세웠어.
그 추운 데서. (...) 그 추운 때에 그 옷을 벗겨서 쳐 두드리다가 버치면 과짱하
게 세워 놔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보게 하고...... 너무 지나치게 허영 죽었
수다. (...) 그때 임신 중이었고 한 예닐곱 달 됐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너무
잔인하게 죽여 붙었수다. 이제도 동서 생각을 허민 기가 막힙니다.

이제도...... (흐느낌) 이제도 생각하면... ..후...... (...) 이제도 동서 생각
을 허민, 밥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이제 죽어도 원이 었수다. 실컷 밥
도 먹고 실컷 옷도 입고, 오늘 죽어도 원이 었수다.”³⁸⁾

38) 한정선, 『비참한 움막 수용소 생활』,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고 하면 사는 법』, 앞의 책, 229쪽.

전반적으로 화자는 목메어 말을 잊지 못하였다. 무자비한 고문 끝에 동서가 죽었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에 나신으로 밤새 바깥에 서 있다가 구타에 이어 총살당한 것이다. 그런데 화자에게 특히 한스러운 것은 임산부인 동서가 나신인 채 고문당했다는 점이다. 물론 처음에는 나신을 명확히 하지 않고 ‘뿔허게’ 죽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랫도리’까지 다 벗겨졌다고 하여 나신 상태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나신인 채 추운 겨울 밖에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과짜하게 세워 놔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보게” 한 것이 여성으로서 동서에게 치명적이었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잔인하게’ 죽인 것이라 한 것이다. 이 역시 나신 고문을 성고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오래도록 기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성고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한 데는 동서의 일이긴 하지만,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은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동서가 죽은 상태라 이로 인한 2차피해 문제도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성고문 사례를 보면 자신이 직접 겪은 경우 대체로 나신 상태를 기억하고는 있지만, 이를 일반적인 고문으로 기억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자신이 겪은 나신 고문을 성고문으로 명확히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적다. 반면 역시 사례는 적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하는 경우도 나신을 성고문으로 인지하였다. 이렇게 보면, 자신이 겪은 성고문의 경우 성적 요소를 빼고 일반적인 고문 과정으로 기억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일반적인 인권유린과 성고문의 경우 성적 침해를 망각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일반적인 인권유린 혹은, 나신 고문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 물론 수감 중 여성들의 경우 다양한 성폭력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유방이나 성기에 대한 폭력적 행사 및 남녀에 대한 성교 강요가 그것이다.³⁹⁾ 또한 당시 여성이 체포되면 겁탈이 다반사였음이 여러 증언에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여성 화자들의 경우 수감되어 고문을 받은 경우는 많지만 지서 내에서의 강간에 대해 구술한 이는 없다. 나신 고문에 대해 구술한 경우도 적은 편이다. 다수의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전하면서도 성폭력에 대한 내용은 현격히 적은 것이다. 이는 제주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이 매우 제한적이고 선택적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사건 후로부터 구술 당시에 이르기까지 50여년 간 제주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젠더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적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성적 문란의 혐의를 두는 문화가 문제인 것이다. 이로 인한 가족이나 지역 사회의 눈, 무엇보다 자신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망각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성폭력 피해를 피해로 보지 않는 기류 때문으로도 보인다. 권귀숙이 지적하듯이, 진상 보고서에조차 성폭력은 제주4.3의 ‘희생’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이다.⁴⁰⁾ 이런 영향으로 여성 화자들조차 대체로 성폭력을 제외한 일반적인 인권유린 피해를 중점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순경 각시’로 기억하기

제주4.3 당시 경찰과 ‘성 관계’(이하 ‘관계’)를 맺은 여성들을 ‘순경

39) 유방을 도려낸 일에 대해서는 이춘형(82세, 여) 증언, 1996, 오금숙, 앞의 글, 239쪽 재인용) 수감자 남녀에게 성교 강요하고 여성의 국부를 불로 지진 일에 대해서는 홍경토(70세, 남, 교사) 증언, 1997(오금숙, 앞의 글, 246쪽 재인용).

40) 권귀숙, 앞의 논문(2014), 180쪽.

각시'라 한다.⁴¹⁾ 물론 이들 중에는 경찰과 법적 결혼을 하여 구술 당시까지도 지속적으로 가정생활을 꾸려온 이들도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여성들은 경찰과 일시적인 내연관계 혹은, 성관계를 맺었다가 축출, 죽음 등 파국을 맞기도 하였다. 이처럼 '순경 각시'의 양상 및 귀착점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애초에 강압적인 방식으로 경찰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의 혐의로 감금되었다는, 정치적 약점이 있는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경찰과 관계를 맺은 것이다. 따라서 수감 중 여성이 경찰과 강제적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순경 각시'는 성고문과 접치기도 하고, 그것을 빌미로 차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순경 각시'는 제주4.3 당시 성폭력 피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순경 각시'를 '강제결혼'이라는 혼인 관계⁴²⁾보다 강압적 성관계의 측면에서 보고, 이에 대한 여성의 기억과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경찰 수발들기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경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시중에 그치지 않고 성추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순경 각시'에 포함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감시 시멘트에 꿰어앉아 경찰들의 발을 씻기거나 담뱃불을 붙인 일이다. “너까짓 거 하나 싸 뒤그네 보고해 불민 그뿐”⁴³⁾이라 하였

41) 경찰을 주체로 하여 '경찰 서방'(양경숙, 앞의 체험담, 83쪽), '재력가의 사위'(오금숙, 앞의 글, 247쪽)라는 말도 있으나, '순경 각시'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고 피해자 여성의 처지를 고려하여 이를 택하기로 한다.

42) 강제결혼에 주목한 연구로는 오금숙, 앞의 글, 245-248쪽 참조. 이 연구의 경우 서청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과 강제결혼의 원인을 성적 욕망과 재정적인 필요성 등 가해자 측의 의향과 처지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서청뿐 아니라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 지역 내의 경찰, 군인을 가해자로 하여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 다룬 이 글과 차이가 있다.

43) 고의봉, 『너무 창피해서 아프다고 말도 못했수다』, 『갈치가 갈치뿔맹이 꿰어 먹었다 할 수 밖에』, 앞의 책, 144-145쪽.

으니, 죽음의 공포 때문이라도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총상을 입은 데다 이러한 위협을 받자 피오줌을 쌀 정도로 노심초사 하며 공포에 떨었다고 하였다. 물론 얼핏 보면 단순히 경찰들의 일상적인 뒤통다끼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을 ‘노리개’나 마찬가지로 하고, 당시 상황을 수치스러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발이 아닐 수 있다. 정치적 약점을 잡고 일시적으로 여성의 성을 착취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적 요소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수감 중에 “순경이 자신과 결혼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거절하여 죽”⁴⁴⁾은 한 ‘처녀’의 사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물론 실제로도 ‘순경 각시’ 중 많은 이들이 수감자였다.

수감 중 ‘순경 각시’가 된 사례로 양경숙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여성은 옷이 내려가지 않을 만큼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그래서 나신 고문을 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만큼 구타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여성이 출감 후 유부남 순경과 관계를 맺었다. “경찰 서방하곤 살아보진 안허연. 그자 가명 오명 살앗주. 각시 잇이난”(83쪽)이라고 하듯이, 자식까지 낳았지만 동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순경과 관계를 맺고 나서는, 그렇게 극심하던 구타가 없었다고 하였다. (“경허연 허난 내가 다음부터 매도 안 맞고, 시국도 편안해”⁴⁵⁾) 따라서 순경과 관계한 것은 극심한 고문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젠 그때 그 순경 알양 무사 애기 나명 살아져신고, 그 생각뿐이라”⁴⁶⁾며, 구술 도중 울먹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마음에 없는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회한을 표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여성의 경우 이러한 ‘순경 각시’로서의 삶보다 고문에 대한 기억이

44) 이춘형, 앞의 증언.

45) 양경숙, 앞의 체험담, 78쪽.

46) 양경숙, 앞의 체험담, 76쪽.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구술 비중을 보아도 그렇다. 달갑지 않은 ‘순경 각시’로서의 삶을 안길 만큼 고문의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순경 각시’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그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말하고 울고 나면 시원해진다는 데서 그간 이에 대해 말하기조차 꺼려했음을 알 수 있다. 김오배 역시 수감을 계기로 ‘순경 각시’가 되었지만, 양경숙과 달리 정식으로 결혼한 경우다.⁴⁷⁾ 물론 결정적 계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즉, 결혼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죽일까봐 그랬던 것이다. 관계를 맺으니 고문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양경숙에 비해, 관계의 불가피성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도 이 여성은 당시 경찰관이던 남편과 살고 있으며, 함께 그러한 ‘흑역사’를 반추할 정도로 여유로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와 결혼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그러한 경험이 이 여성에게도 수치스러운 과거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다.

서청단장 김재능이 나를 노렸다. 김재능이란 놈은 나이든 여자든 젊은 여자든 어떻게 하면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해볼까 궁리하는 놈이었다. 김재능에게 얼렁뚱땅 “다음에 보자”고 하여 도망쳐나온 적도 있다. 또 2연대장이 날 노렸다. 한번은 자신의 부하에게 날 몰래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 부하들은 우리 집 담을 넘다가 실수해서 우물에 빠지기도 했다. 나는 결국, 날 도와 주었던 2연대 헌병대장과 결혼했다.⁴⁸⁾

이는 두 차례의 위기를 재치 있게 넘겼지만, 결국 ‘순경 각시’가 된

47) 김오배,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에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에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앞의 체험담, 215-216쪽. 실제로 김오배는 구술 당시 남편과 동석하여 결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 가볍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48) 김○○(당시 76세, 여) 체험담, 1996, 오금숙, 앞의 글, 247쪽 재인용.

여성의 이야기다. 물론 이 외 생애담이 없어서 헌병대장과의 결혼 과정 내지 이후 삶의 모습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결혼 생활이 순탄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당시의 성폭행 및 죽음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 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점에서 ‘순경 각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여성 화자들은 다양한 계기와 양상으로 ‘순경 각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분명 수치스러운 과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된 계기 특히, 수감 중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더 나아가서 죽음의 위기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로 인해 관계의 강압성, 즉 성적 자결권의 침해라는 성폭력적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적 폭력성이 제거된 ‘순경 각시’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순경 각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때는 (…)
 얘기 없는 처녀들 중에 순경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 무슨 순경 각시
 무슨 순경 각시…….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혼했어.”⁴⁹⁾와 같이 ‘순경
 각시’는 감옥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면서 일반 여성들의 문제가 된 것이
 다. 교사 출신의 한 ‘순경 각시’의 경우 아이도 낳고 살았지만, 한 번도
 부부동반한 모습이 목격되지 않았다는 증언⁵⁰⁾도 있다. 할 수 없이 결혼
 은 하였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일도 있었다. 전자의
 사례로는 원옥연이 기억하고 있는, 경찰 첩이 된 사촌언니들을 들 수
 있다.⁵¹⁾ 이 경우도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경찰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그 위협 대상이 당사자 여성뿐 아니라 가족들로 확대되었다.⁵²⁾ 그런

49) 양중윤, 앞의 체험담, 78쪽.

50) 김○○(당시 81세) 증언, 1996, 오금숙, 앞의 글, 246쪽 재인용.

51) 원옥연, 앞의 체험담, 102쪽.

52) 실제로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여 부모가 죽은 사례도 있다. “정열이 어땀은 순경이

점에서 관계의 불가피성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기와 살림까지 버리고 경찰의 첩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순경 각시’가 한 여성의 성적 자결권뿐 아니라,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한 군인 장교가 교사를 하던 한 여성을 탐내서 그녀를 위협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성의 동생을 보고 반해서 이번에는 같이 살던 여성을 버리고 그 동생과 결혼하려 했다.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자 군인들은 총으로 위협했다. 그 여성의 집은 양철집(그 당시의 양철집은 부잣집의 상징)이었는데 총구멍으로 범벅이 됐다. 결국 그 군인 장교와 결혼한 동생은 육지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혼당했다고 한다.⁵³⁾

자매 ‘순경 각시’ 사건으로, 군인 장교의 성적 만행과 협박으로 인해 두 여성 및 그 가족이 큰 희생을 치른 경우다. 자신의 약혼남을 살리기 위해 서청 간부와 결혼한 사례⁵⁴⁾도 마찬가지다. ‘순경 각시’가 됴므로써 약혼남은 살렸지만, 이를 통해 그와 이를 미래의 가정이 파탄 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 남동생을 살릴 목적으로 희생된 사례도 있다.⁵⁵⁾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미리 나서서 경찰과의 결혼을 주도한 사례도 많았던

딸을 달라고 하는 걸 거절했다가 잡아다가 죽여버렸어. (...) 그 딸이 순경한테 시집을 안가니까 그 어미를 잡아다가 죽여놓고 그 딸 몸도 빼앗았어.”(한 할아버지의 증언, 『대정지역의 4.3 항쟁』, 『4.3장정』 6, 앞의 책, 60쪽)

53) 이○○(당시 73세, 남) 증언, 1998, 오금숙, 앞의 글, 248쪽 재인용.

54) 홍경토, 앞의 증언. 그 상황을 “자신을 검탈하려던 서청과 결혼”한 것이라 표현하여, 이 결혼의 기반 즉, 성적 침해를 분명히 인지하고 표현하였다.

55) 최길두(당시 80세, 남) 증언, 1996, 오금숙, 앞의 글, 247쪽. 이외 서청 출신 영화배우가 성산포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빼앗아 살았다는 증언도 하였다.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정약결혼’이다.⁵⁶⁾ 이는 군경의 강요에 여성이 응한 ‘순경 각시’에 비해, 여성 쪽 부모의 제안을 군경이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결혼 형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근원적으로는 ‘순경 각시’를 양산하는 한 방식일 뿐이다. “네가 저 놈과 결혼만 하면 우리 가족은 안전할 수 있다”고 달래면서 자신의 딸을 강제결혼시킨 사례를 보면 부모 쪽의 제안에 따른 ‘순경 각시’ 역시 강압에 밀려 결혼한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대표적 예는 귀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강간 및 살해 사건이다.

10시쯤 되니 군인들이 흐 8명 쯤 와서 다 일어난 얼굴 들어 얼굴 들어, 막 험하다. 다 얼굴 들러, 얼굴 들러 허난 이젠 다 일어난 얼굴을 드니까 자기네 보기에 젊고, 애기라도 없고 그런 사람덜. 그런 사람덜을 일주일 저녁을 하여튼 맨날 저녁에 와서 데리고 나가서 강간을 하는 거라미썸. (...) 그렇게 강간해 두고 가 불면 그냥 밥도 아니 먹고, 그냥 매날 앓앙 울음 경 울어서마썸. 여자들이 경 허단 허단⁵⁷⁾

수용소에 있을 당시 소위급 군인 8명이 일주일 간 밤마다 들이닥쳐 집단적으로 강간했다는 것이다. 젊고, 예쁘고, 아기 없는 여성들이 그 대상이다.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감되었던 감옥과 달리 수용소는 ‘산’에서 귀순한 사람들을 임시로 거주케 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전까지 극심한 해코지를 당했던 이들에게는 당시 수용소 상황도 감옥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관리자인 군경의 감시 하에 일체의 방어권이 없는 처지였기

56) “서청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모들이 내놓은 제주도 아녀자들의 정약결혼 제의를 받아들여 놀러 살기도”(허상수, 『제주 민중 항쟁 연구의 의의와 성과』, 『4.3장정』 1(제주: 제주사삼연구소, 1990, 94쪽.) 했다고 한다.

57) 홍난선, 앞의 체험담, 305-306쪽.

때문이다. 이 사건은 그런 틈을 노려 젊은 여성들의 성을 유린한 것으로, 제주4.3 당시 최악의 성범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압적 방식에 의해서나마 지속적인 관계성을 확보한 앞서의 ‘순경 각시’들과 달리 여성을 일시적인, 정육 배출의 도구로 삼았⁵⁸⁾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례는 당사자의 체험담이 아니다. 함께 수감되었던 시누이의 피해상인 것이다. 하지만 살해당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여성은 이러한 체험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도 이 여성들은 밤마다 당한 일을 함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강간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 여성들이 해당 군인에게 총살당한 것이다. 성폭력 혐의로 고발당해 감옥에 갇혔던 8명이 석방 후 분풀이로 죽여 버린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돌발 변수에 의해 강간후 살인 양상을 띠었지만, 그런 돌발변수가 없었더라도 많은 ‘순경 각시’들이 살해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시적으로 순경과 관계를 맺은, 즉 강간당한 ‘순경 각시’들이 그랬다. 이는 군경과 여성 간의 일시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당시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전란 속이지만, 군경 내의 강간은 군율로서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8명의 집단 강간 가해자들이 처벌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군경과 여성과의 일시적인 ‘관계’는 극비리에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없었던 일이 되어야 했다. 군경으로서는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감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여성들의 입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계의 흔적을 말살하는 것 즉, 죽이는 것이다. 당시 9연대 정보과장이었던 탁대위가 ‘활동’ 여성인 강상유를 죽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탁대위는 미망인이었던 이 여성을 강간한 후 함께 살다가 ‘어쩐 일인지 그녀를 죽였’기 때문이다.⁵⁹⁾ 그런데 이러한 강간후

58) “어디 놈의 눈 틈이나 어디 가서 그냥 강간만 해서 보내는 거라.”(홍난선, 앞의 체험담, 316쪽)

59) 강소희(당시 77세, 여) 증언, 1996, 오금숙, 앞의 글, 240쪽 재인용.

살인은 사전에 작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서에 있던 경찰들은 문밖 얻영 살았지께. (...) 군인들도 여기왕 아가씨들 이영 살다 가민 어디 강 죽이느냐 하면 서모봉에 데령 강 죽이고 들앙 텅기 단 동복하고 조천 사이에도 죽여 불고 (...) 함바집 안에서도 문밖 홀어명 데령 살았주께. (...) 얘기도 나고 헛주. (...) 심영 텅기단 죽여 가고 함덕 간에 얼마나 죽여 버려서. (...) 방댕이(놀잇감) 허당도 쏘앙 죽여 불고, 이게 곶이 민 부끄럽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지금이나 그런 말이라도 곶암지 옛날은 이게 부치럽고 사람이 인사가 아니라. 이런 곤지를 못헤 낫주께. 요즘에는 성관계니 뭐이니 그런 얘기도 나와 가고 여성 단체들도 다 그런 걸 하니까 이해를 하는 거라. 홀머영들은 좀 닳은(예쁘다 생각되는) 사람은 문밖 순경 각시로 살아서.⁶⁰⁾

서모봉을 비롯하여 조천, 함덕 간이라 하여, 자기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술하게 일어났음을 시사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성적 도구로 활용된 뒤 죽임을 당한 것이다. 심지어 이들 피해 여성 중에는 군경의 아이를 낳은 이도 있다. 증언자가 인간적으로 부끄러워한 것도 강간후 살인이라는, 비인간적인 범죄 때문이다. ‘사람의 인사’가 아닌 것이다. 물론 강간에 저항하다 살해된 여성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⁶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4.3 당시 많은 여성들은 정식 혼인에서 강간후 살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순경 각시’의 삶을 살았고, 죽었다. 심지어 군경은 무장대의 부인조차 각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2명의 여성을 데리고 살기도 하였다.⁶²⁾ 강간에다 축첩의 혐의까지 있는

60) 김형조, 『선홀리의 상징 김형조』,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에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 만』, 앞의 책, 286쪽.

61) 예컨대, 친정집에 임시 주둔한 군인에게 저항하다 동생이 총살당한 사례를 들 수 있다.(강경옥, 당시 77세, 여) 증언, 오금숙, 앞의 글, 243쪽.

것이다. 그 양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강압적 관계다. 이런 점에서 ‘순경 각시’는 강간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성적 자결권을 박탈당한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요청에 부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피해 여성들에게 ‘순경 각시’로서의 삶은 안전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남편에 연좌된 혐의를 벗고 당면한 고문 및 가족의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과 관계를 맺은 것이다. 또한 당시 남성 부재의 여성은 모두의 여성일 가능성이 높았다. 전란이라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남편 부재의 여성은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마련인 것이다. 더욱이 부재한 남성은 ‘불온’한 존재다. 그럴 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군경의 여자가 되는 것은 다른 남성들로부터의 성적 침탈을 방어하는 의미도 있다. 이런 점에서 ‘순경 각시’는 정치적, 성적으로 이중적인 안전망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폭도로 몰려 죽임을 당한 남성의 부인인 경우, ‘폭도 각시’⁶³⁾라는 사회적 낙인을 벗기 위해서도 ‘순경 각시’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는 그나마 혼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또한 강간의 지속성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모순적이자 치욕스러운 과거사일 뿐이다.

문제는 피해자 여성들이 이러한 강간에 대한 증언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⁶⁴⁾, 이를 심상한 남녀 관계를 뜻하는, ‘순경 각시’로 기억했다는 것이다. 타인의 피해에 대해 ‘강간’⁶⁵⁾이나 ‘성폭행’(남성 화자)⁶⁶⁾이라

62) 장두일, 『낙선동 4.3성 쌍기』, 『지금까지 살아진 것이 용헌거라』, 앞의 책, 219쪽.

63) 오금숙, 앞의 글, 250쪽.

64) 오금숙은 이에 대해, “성폭행 관련된 증인은 본인 자신이 하기 힘든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채록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언보다 간접적인 증언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247쪽) 이러한 사정은 오금숙이 채록하던 1990년보다 나아졌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5) 홍난선, 앞의 체험담, 305-306쪽.

명명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수치스러운 과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2차피해를 두려워한 까닭일 것이다. 밤에 무조건 끌려간 ‘동네 처녀들’ 중 몇몇이 구술 당시에도 “제주시에 살아있고 시집가서 성산쪽에 사는 분도 계”⁶⁷⁾시기 때문에, 사건 및 피해자를 알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도 이러한 2차피해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것 다 말로 할 수가 있어?”라는 이재신의 말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이 겁간 상황이 끔찍했다는 것도 되지만, 피해자 여성을 배려한 발언이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기에는 금기된 과거사로서 제주4.3의 정치적 문제가 걸려 있었다고 본다. 우선 군경뿐 아니라 무장대에 의해서도 여성들이 성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체험담에 보면 무장대의 처녀 납치 사건이 간간히 보이기 때문이다.⁶⁸⁾ 물론 납치, 살림 노역 등이 바로 성적 침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의 납치는 그 자체로 성적 위협을 수반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서 살림 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은 앞서 경찰 수발과 마찬가지로 성적, 노동적 침탈의 위협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장대의 성범죄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무장대의 강제 혼인 사례도 없거니와 ‘무장대 각시’, ‘산사람 각시’라는 용어는 없다. ‘순경 각시’만 회자되어온 것이다. 김형조의 경우 ‘경찰과 여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군경의 강제 결혼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군경의 강제 결혼이 당시에 만연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지서 경찰들은 모두 강제 혼인을 하였다고 하였다. 악명 높은 경찰관 혹은, 서청뿐 아니라

66)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폭행이지. 자기 말 안들으면 죽여 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이 마을에서 장가든 서청도 있고”(고정부, 『대정지역의 4.3 항쟁』, 앞의 글, 59쪽)

67) 이재신, 앞의 글, 46쪽.

68) ‘인성리 윤양순 납치사건’, 『내가 겪은 4.3』, 『4.3장정』 6, 앞의 책, 82쪽.

모든 경찰관이, 그리고 군인도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다고 하였으니⁶⁹⁾ 이것이 당시 당연시될 만큼 한 풍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순경 각시’는 당시 군경 즉, 공권력을 가해자로 지목할 때 가능한 말이다. 당시 군경은 토벌을 피해 산으로 도주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무고한 마을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순경 각시’는 이러한 군경의 무자비한 학살의 한 사례인 것이다. 다만 특별법 제정 전까지만 해도 무장대를 ‘폭도’라 하여 붙은시하는 반면 공권력 행사자로서 군경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류가 강했다. 따라서 군경의 학살 내지 강간을 공공연하게 표출할 수 없었다고 본다. 강간 대신 ‘순경 각시’가 만연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여성들은 이상과 같은 성/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피해를 ‘순경 각시’로 기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데리고 살다’ ‘언어 살다’ 등으로 말한 남성 증언만큼 강간에서 성적 요소를 크게 약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가 정치적인 의미와 얽히게 되면, 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도 중층적인 문제에 걸려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4.3 성폭력 피해는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은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 관련 여성 생애사에서 “침묵이 여성들의 주요한 ‘기억방식’”⁷⁰⁾이라는 점은 제주4.3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순경 각시’는 군경의 성폭력 특히 강간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이 개인적/사회적 혹은, 성적/정치적 사정에 의해

69) “제주도 여성과 결혼한 사병이 적지 않았다.”는 국방부 기록물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해방과 건군: 1945-1950. 6, 서울: 국방부, 1968), 445-446쪽.(오금숙, 앞의 글, 248쪽 재인용)

70) 조은, 『차가운 전쟁의 기억』, 『전쟁의 기억, 역사와 문학』 하(서울: 월인, 2005), 258쪽.

정상적인 관계를 뜻하는 '순경 각시'로 기억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반세기만에 제주4.3의 진상 및 피해에 대한 증언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미 완료된 '1000인 증언 사업'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의 '홍수' 속에 성폭력 피해 사례는 극히 적다. 특히, 그러한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화자의 체험담에서도 성폭력 관련 화제는 드물다. 물론 이 중 본인의 직접 체험담은 손에 꼽힐 정도다. 당시 다반사였던 성폭력 사건에 비한다면 이에 대한 구술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 글은 이처럼 실제와 달리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증언의 공백을 들여다 본 것이다. 또한 명백한 강간 사건이 '순경 각시'라는 일상적 현상으로 기억되어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그 양상과 의미를 짚어 보았다.

우선 일반인권 유린의 경우 여러 정황상 성적 피해가 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화자들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성고문의 경우 나신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보다 고문의 가혹함, 고통 등에 비중을 두어 기억하였다. 이상 두 가지를 통해서는 여성들이 수치스러운 경험에 대해 망각하거나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간의 경우 2차피해라는 성적 요인과 순경이라는 가해자의 위상으로 인해 성범죄보다 '순경 각시'라는 일상적인 현상으로 기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주4.3은 성담론 금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제주4.3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의 기억 양상은 소략하거나

정확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기억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들의 기억 내용이야말로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는 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망각의 내용을 통해 오히려 당시 여성 성 피해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사를 은폐하기 위해, 혹은 사건 후의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껴서기 위해, 침묵하였고, 다르게 기억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여성들은 그렇게 된 불가피성 즉, 고문의 고통, 죽음의 위기 등을 강조하였다. 순경 각시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한, 수동적 행위라는 것이다. 물론 순경 각시는 제주 사회가 여성 성 피해자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당사자들 역시 이러한 이름으로 자신들의 성적 피해를 기억해 왔다. 이는 기억 속에서 성적 요소를 지워버렸다는 점에서 능동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귀숙, 『기억의 재구성 과정-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 38-1, 한국사회학회, 2004, 107-130쪽.
- _____, 『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지성사, 2006.
- _____,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 연구』, 『탐라문화』 45, 탐라문화연구원, 2014, 169-198쪽.
- 김성례,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제주 4·3학살을 중심으로』, 『흔적』 2, 문화과학사, 2001, 263-292쪽.
- _____, 『제주 4·3과 여성경험: 폭력의 기억에서 생존의 연대로』, 『여성과 민주화운동』(5.18연구소 학술총서 4), 서울: 경인문화사, 2004.
- 김은실, 『4·3 홀어명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49-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6, 313-359쪽.
- 도날드 A. 리치 편(손동유외 역), 『현대 구술사 연구의 현장』, 서울: 선인, 2016.
- 박상란, 『금지된 과거사에 대한 여성의 기억과 의미 - 여계(女系)전승 동학농민혁명담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4, 동학학회, 2017, 43-68쪽.
- _____, 『생존 희생자에 대한 기억 서사로서의 ‘신이한 동물담’: 동학농민혁명유족 증언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5, 한국문학연구소, 2017, 161-198쪽.
- 박현숙, 『여성 전쟁체험담의 역사적 트라우마양상과 대응방식』, 『통일인문학』 57, 인문학연구원, 2014, 91-124쪽.
- 신은제, 『제주의 기억과 역사적 정체성: 소수자(지방)의 기억술』, 『역사연구』 30, 역사학연구소, 2016, 149-183쪽.
- 양정심,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사람』 25, 수선사학회, 2006, 275-305쪽.
- 연남경, 『집단학살의 기억과 서사적 대응』,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281-308쪽.
- 염미경,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구술생애사』, 『정신문화연구』 28-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37-164쪽.
-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제주4.3 연구소 편), 서울: 역사와 비평사, 1999.
- 우에노 지즈코(이선이 역),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서울: 현실과문화, 2014.
- 이재경 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흥천: 아르케, 2013.
- 이정식, 『제주 4·3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과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중심으로』, 『어문학』 102, 한국어문학회, 2008, 529-555쪽.

- 이정주,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 『제주도연구』 17, 제주 학회, 2000, 51-93쪽.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선인, 2003.
- 조명기·장세룡, 『제주 4.3사건과 국가의 로컬기억 포섭 과정』, 『역사와 세계』 43, 효원사학회, 2013, 205-235쪽.
- 조옥라·정지영 편, 『젠더, 경험, 역사』,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04.
- 조은,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 『한국문화·문학과 구술사』(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 폴 톰슨 외(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2010.
- 허호준,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 제주대 출판부, 2013.

[Abstract]

Womens' Memory Narrative about The JeJu 4.3 Incident and
'Police Wife'

Park, Sang Ran*

This study contemplate women's memory system and define sexual harrassment during Jeju 4.3 Incident from memory narrative view. Main objects are common violence of human rights, sexual tortures, 'Police Wife'.

At first, confinements and torture perceived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despite they seem as sexual harassment. Sexual torture stood out as agony and fear besides sexual humiliation from a naked body. It all seems as memory act to erase sexual elements. 'Police Wife' has various aspects, but they all correspond to rape because of oppressive relationships. Recalling it as 'Police Wife' is for sexual/political reasons.

To sum up, women hold her tongue or omitted sexual elements about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during Jeju 4.3 Incident. It relates to feature of memory as stating what she recalls. Considering choice work, we can say that the women storytellers only recalled which are sexually/politically safe.

Key words : Jeju 4.3 Incident, woman, 'Police Wife', memory narrative, sexual harrassment, Sexual torture, violation of human rights

논문접수일 : 2019.04.17.

심사완료일 : 2019.05.15.

게재확정일 : 2019.05.22.

* Dongguk University / baksangran@daum.net

к с і